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9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이병훈·김남국·장철민

김용민 · 김승원 · 이수진

송재호 · 정성호 · 신정훈

주철현 · 홍성국 · 양경숙

오영환 · 남인순 · 이성만

이수진(비) · 장경태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함으로 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10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 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제10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제21조제1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23. 소상공인의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
	동조합을 설립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
	폼 구축 지원
<u>4.·5.</u> (생 략)	<u>5.•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	지원)
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	
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	
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

<u>4. · 5.</u> (생 략)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 (생 략) <신 설>

<u>23.</u> (생 략)

② ~ ④ (생 략)

보의 제공

<u>5. · 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3. 소상공인의 온라인 공동 판

매 플랫폼 구축 지원

<u>24.</u> (현행 제2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